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

당사 운용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투자신탁**

-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대상서류**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 변경일:** 2010년 9월 10일

**□ 변경 내용**

- 1) 증권형(재간접형)으로의 펀드 형태 변경에 따른 정정
- 2) 모투자신탁 관련 문구 삭제
- 3) 법규 개정 사항 반영 및 자료 갱신

**\* 집합투자규약 주요 변경 내용**

항 목	기 준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전반 - 집합투 자기구의 명칭 변경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제 3 조 (집합투 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 2. 증권형(주식) 6. 모자형 (중략)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모 투자신탁 (주식	② 2. 증권형(재간접형) 6. 삭제 (중략) ④ 삭제
제 4조의 2 (해 외보관대리인)	(신규 추가)	제4조의 2(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 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 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 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 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 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16조(투자목 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 자하는 모투자신탁을 ~ (이하생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 는 집합투자증권을 ~ (이하 동일)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p>	<p>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p> <p>2.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1.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p> <p>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p> <p>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는 제외함.)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p> <p>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5.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p>6.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p> <p>7.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통화나 증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p> <p>8.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증권·통화</p>
---------------------------	---	--

		<p>나 증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이하 통칭하여 “파생상품”이라 한다)</p> <p>9.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p> <p>10.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p> <p>11. 증권의 차입</p> <p>12.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p>1.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p> <p>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동 투자한도를 일시 초과할 수 있다.</p>	<p>1.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p> <p>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p> <p>3.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p> <p>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p> <p>5.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p> <p>6.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p> <p>7.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p> <p>8.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p> <p>9.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p> <p>10.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p>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p>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p>
--	---	--

		<p>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과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5.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6.     과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7.     과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p>
--	--	---

		<p>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8.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9.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10.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4호 (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신규)</p>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4호(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6. 투자신탁의 형태 변경을 위한 신탁계약 변경 효력발생일 이후 1월간</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8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p>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③제19조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본문,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제19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p>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p> <p>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⑤제19조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⑥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제4항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제25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제1항 제6호 일부 삭제</p>	<p>6. 종류 I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50억 이상 개인,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 <u>변액보험</u>,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u>또는 이 투자신탁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u></p>	<p>종류 I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50억 이상 개인,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p>

제25조의2 (수익증권의 전환) 제1항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 (생략)	①집합투자업자 및 <u>판매회사</u> 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 (생략)
제25조의3(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및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삭제>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제2항 일부 문구 삭제	②	②(모투자신탁 관련 문구 삭제)
제37조(수익자 총회) 제10항 삭제	⑩	⑩(모투자신탁 관련 문구 삭제)
제39조(보수) 제3항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u>0.80%</u>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u>0.05%</u>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u>0.10%</u>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u>0.04%</u>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제2항 제 9호 추가 및 제42조의 2 추가		(중략)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중략) 제42조의2(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제42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래 결제수수료 (transaction fees) 2. 보관비용 (safe-keeping fees) 3. 기타 부수비용 (out-of-pocket expenses)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항 일부 문구 삭제		(모투자신탁 관련 문구 삭제)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1항 및 4항 일부 수정 (법규 개정 사항 반영)	① 중략 3. <u>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u> (중략)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 생략)	① 중략 3. <u>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u> 4. <u>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u> (중략)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 생략)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제 2항, 제5항 및 제		(모투자신탁 관련 문구 삭제)



6항 일부 문구 삭제		
부칙	(추가)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정정 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 투자설명서 주요 변경 내용**

항 목	기 준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전반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변경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u>자</u> 투자신탁 (주식)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투자신탁 (주식 - <u>재간접형</u> ) <b>모투자신탁 관련 문구 삭제</b>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u>주식형</u> ) (중략)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u>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u>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u>재간접형</u> ) (중략)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신규)	<b>2010. 9.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에서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투자신탁(주식 - 재간접형)”으로 변경</b>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b>삭제</b>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 <u>주식</u> ) 투자신탁, 종류형, <u>모자형</u> 나. 종류형 구조 (중략) *종류 I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용 반영 <b>다. 모자형 구조</b>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 <u>재간접형</u> ) 투자신탁,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중략) *종류 I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용 반영 <b>(삭제)</b>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성장잠재력에 근거하여 선정된 특정 산업군 및 업종 관련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추구합니	이 투자신탁은 성장잠재력에 근거하여 선정된 특정 산업군 및 업종 관련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엘라이언스벤처스틴 글로벌 성장경향 포트폴리오를 주된

	다.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추구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용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 및 수익구조 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나. <u>피투자 펀드</u> 의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u>투자신탁 재산의 100%이하를 모투자신탁인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합니다.</u> (중략)  <u>모투자신탁</u> <u>해외집합투자업자</u> 나.3) 기타 투자지침 (중략) <u>모투자신탁은 주로 보통주에 투자하지만, 신청방식(sponsored) 또는 비신청방식(unsponsored)의 ADR, EDR, GDR 및 이와 유사한 증서를 포함하여 미국 내외의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 워런트, 전환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u>  (추가)  4) 환위험 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모투자신탁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유가증권과 통화로 이루어진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재산내 외화투자자산액에 상응하는 미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100% 환헤지할 것을 목표로 하며, 외국환율 변동 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미달러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환헤지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	이 투자신탁은 <u>성장잠재력에 근거하여 선정된 특정 산업군 및 업종 관련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u>얼라이언스번스틴 글로벌 성장경향 포트폴리오(이하 “피투자 펀드”)</u>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u> (중략)  <단어 변경> <u>피투자펀드</u> <u>운용회사</u> 나.3) 기타 투자지침 (중략) <u>삭제</u>  <u>나.4) 피투자펀드 개요 신규 추가</u>  다. 환위험 관리 집합투자업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환헤지 전략의 실행 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율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 금액에 상응하는 미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환헤지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목표 헤지비율은 80%에서 +/- 20%수준입니다. (중략)

	<p>인 경우 미달리화의 원화에 대한 목표 헤지비율은 80%에서 +/- 20%입니다. (중략)</p>	<p>라. 수익구조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해외주식등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구조입니다.</p>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아래의 투자위험은 <u>모투자신탁</u>을 기준으로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중략)</p> <p>다. 기타 투자위험 헤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u>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u>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다른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전세계 기업들의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하는 <u>주식형 모투자신탁</u>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투자위험 5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p>	<p>아래의 투자위험은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u> 기준으로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중략)</p> <p>다. 기타투자위험 헤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u>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u>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다른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전세계 기업들의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하는 <u>해외 집합투자기구를</u>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투자위험 5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p>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p>	<p>가. 매입 (중략) (3) 종류별 가입자격 (중략) - 종류I :  (4) 수익증권의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  (중략)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생략</p>	<p>가. 매입 (중략) (3) 종류별 가입자격 (중략) - 종류I : 집합투자규약 변경내용 반영 (4) 수익증권의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 <u>및 판매회사</u>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  (중략)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모투자신탁 관련 문구 삭제</p>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u>0.80%</u> - 신탁업자보수율 : <u>연 0.05%</u>	<u>0.10%</u> - 신탁업자보수율 : <u>연 0.04%</u> - 피투자펀드에서 부과하는 운용보수 <u>연 0.70%</u> - 집합투자기구 비용 업데이트 및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요약 재무 정보 및 운용 실적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 자산 규모 -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생략)	<b>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b>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i>법규 개정 사항 반영</i>	(중략) ▶ 임의해지 중략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u>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u>	(중략) ▶ 임의해지 중략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u>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u>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i>법규 사항 반영</i>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중략)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중략)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b>법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b> )

\* 자세한 변경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